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4년 1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2)

세무 및 법률정보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 최신 세무예규·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24년 1월호는 2023년 12월호에 이어 2022년도 중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주요 회계심사 및 감리를 통한 지적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2)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fss.or.kr]

(붙임3)

(붙임3) 주요 지적 사례(2)

FSS/2311-08 :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 ▣ 쟁점 분야: 재고자산 평가손실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 결정일 : 2022년
- ▣ 회계결산일: 2009.1.1. ~ 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X1년 중 매입한 상품에 대한 특허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상품 판매가 지연됨에 따라 X5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법적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었다.

한편, 상기 의약품 제조회사는 보건당국에 동 상품에 대한 제조공장 및 성분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X6년 1월 보건당국이 이를 승인하였다. 변경허가 이후에는 회사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 즉 변경허가 전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은 더 이상 유효기간연장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변경허가 전 방법으로 생산된 원료의약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완제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다.

회사는 X5년말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보건당국이 변경허가를 승인한 상품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하였고, 변경허가로 인하여 더 이상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향후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 보건당국의 변경허가와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6, 28 및 30 등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며,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보건당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에 허가받은 사항대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이는 기존 품목허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변경허가 이후에는 변경허가 사항대로만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경 전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으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회사는 보건당국의 변경허가 이후에는 변경 전 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한 의약품 재고는 향후 판매할 수 없는 등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법적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자료의 법적 요건 검토 및 보건당국에 소급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우 규제산업이므로 관련 보건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보건당국의 변경승인 이후에는 기존 방법으로 제조된 의약품의 판매 및 유효기간 연장 불가 등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한 의약품 재고에 대하여 변경허가 여부 및 판매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재고자산이 공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FSS/2311-09 :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 ▣ 쟁점 분야: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 결정일 : 2022년
- ▣ 회계결산일: 2020.1.1. ~ 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전장용(오디오, 정션박스 등) 및 통신용(시스템, 무선, IOT 등)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PCB는 거래처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주문 제작되고 있었다.

'20년 중 회사의 주요 거래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부족 등으로 이미 발주한 물량을 축소하거나 취소하였다. 이로 인해 회사는 특정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해 제작한 제품을 팔지 못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회사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일부 품목은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었다.

회사는 '20년말 및 '21년말 재고자산 평가시 실제 판매가격이나 판매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기말 보유 재고자산 중 취득(제조완료)시점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경과기간별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었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시 일부 품목의 장부가액이 실제 판매가격 보다 높았음에도 동차액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특정 거래처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제품의 납품중단·취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9, 28, 30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며, 진부화되거나 판매가격이 하락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는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기말 보유 재고자산 평가시 실제 판매가격이나 판매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보유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한 회계처리는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평가시 시장 여건, 장기체화 여부, 실제 판매가격 및 판매가능 여부 등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보고기간 후의 판매가격 추이, 재고자산의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 등 순실현가능가치의 하락 요인이 있는지를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해야 하며, 비합리적 가정 또는 낙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FSS/2311-10 :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 쟁점 분야: 유형자산, 매출원가
-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 ▣ 결정일 : 2022년
- ▣ 회계결산일: 2013.1.1. ~ 20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자동차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비상장회사 A회사(이하 '회사')는 금융위기 직후에 저마진 자동차 부품 매출에 따른 손실로 인해 약 3억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자, 당시 회계팀장 甲은 손익을 약간만 조작하면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외주가공비 등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원의 당기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을 조작하였다.

甲은 실제 흑자가 발생하는 연도에 허위계상한 유형자산을 정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甲의 예상과 달리 매년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고,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로 적발될 때까지 손익 조작은 계속되었다.

분식회계 초기에는 유형자산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허위계상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점점 증가하자 채권·채무 잔액을 조정하는 방식도 사용하였으며, 분식회계 마지막 해인 '14년에는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가공의 유형자산 등의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회계팀장 甲 주도 하에 당기비용(매출원가 및 외주가공비)을 가공의 유형자산 등으로 허위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5에 따르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회계팀장 甲은 매출원가를 줄이기 위해 유형자산과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손익조정 분개를 아무 증빙 없이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였음에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제·적발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가 전무하였다.

③ 이에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허위로 계상한 유형자산과 매출채권 만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다고 결론내렸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서 240(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에 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을 때,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오류의 발견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 감사절차가 부정의 발견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③ 회계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회사의 유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분석적 검토를 통해 기계장치 및 공기가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하는 등 특이사항을 발견함에 따라 동 계정에 대해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유형자산 취득 테스트와 관련하여 회사가 1억원이 넘는 기계장치에 대한 구매증빙으로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조작가능성이 높은 수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회사에 요청한 감사증거 중 유형자산 구매대금 지급증빙 등을 제출받지 못했음에도 감사를 종결하는 등 입증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인 회사가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회사가 제공한 감사증거의 신뢰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에 요청한 감사증거는 감사종결시점까지 입수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의견 변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FSS/2311-11 :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 ▣ 쟁점 분야: 이연법인세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 결정일 : 2022년
- ▣ 회계결산일: 2019.1.1. ~ 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종속기업인 B사(이하 '종속기업')로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있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회사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한다는 점에만 중점을 두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 영업권 장부금액을 포함한 종속기업 순자산 중 지배기업의 지분해당액이 세무기준액보다 더 큰 상태로, 미래 과세소득에 가산되어 향후 납부할 법인세 금액을 증가시킴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인 B사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지만, 동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있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도 않았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39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1)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2)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40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그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이러한 이익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지만, 해당 종속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있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4. 시사점

일반적으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해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나,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 또는 처분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상 관련 조건의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라면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FSS/2311-12 :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 **쟁점 분야:** 이연법인세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 **결정일 :** 2022년
- ▣ **회계결산일:** 2013.1.1. ~ 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보유중인 B사(이하 '관계기업') 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지분법을, 별도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였다.

(연결)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도입 이전의 舊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하에서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해 발생원천별로 구분·관리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였다. 회사는 '11년 K-IFRS가 도입된 이후에도 K-GAAP에 따른 회계처리를 그대로 변경 없이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별도)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배당·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연결)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舊 K-GAAP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회사의 일시적차이 발생 원천별 구분

일시적차이 발생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법 자본변동 ▪내부미실현 누계액 ▪손상차손 등 	지분법손익 등
인식 여부	▪이연법인세 미인식	▪이연법인세 인식

(별도)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처분·청산·배당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39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1)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2)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② 舊 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16호(법인세회계)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사가 예상하고 있는 자산의 회수 또는 부채의 상환 방식에 따라 나타날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현행 K-IFRS 하에서는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과거 K-GAAP과 같이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배당·처분·청산에 소멸시점 통제가능성 등 K-IFRS가 요구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4. 시사점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무제표에 적절히 계상해야 한다.

또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통제시점 소멸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계기업에 대한 배당, 처분 이외에 관계기업의 청산도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관계기업의 청산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이 없다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FSS/2311-13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 쟁점 분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 결정일 : 2022년
- ▣ 회계결산일: 2020.1.1. ~ 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자재 구매대금 및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X0년 6월 중 5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되어 있다.

회사는 X0년말 현재 조기상환청구권이 X1년말부터 행사 가능함에도 X2년부터 행사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전환사채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보고기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 시점이 X0년말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이고, 사채권자가 동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 회사가 사채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검토할 때 사채약정서의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조항이 유동성 분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FSS/2311-14 :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 ▣ 쟁점 분야: 기타채무(관광전수금)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 ▣ 결정일 : 2022년
- ▣ 회계결산일: 2014.1.1. ~ 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개별 여행 상품에 대한 관리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관광전수금(기타채무) 계정과목을 사용하였다. 영업부서에서 패키지여행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대금입금을 완료하면 이를 관광전수금으로 계상하고, 계약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관광전수금을 차감하면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회계부서는 매월 영업부서가 제공한 여행상품별 정산내역을 근거로 관광전수금 대변 잔액은 관광알선수입(매출)으로, 차변 잔액은 행사비(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면서 관광전수금 잔액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기중 정산이 미완료된 여행상품에 대해서만 관광전수금의 기말잔액이 존재할 수 있었다.

회사의 회계처리 개요

적요	회계처리	
①계약체결 및 고객 입금	A, B) 현금 100	A, B) 관광전수금 100
②여행 진행	A) 관광전수금 80	A) 미지급금 등 80
	B) 관광전수금 120	B) 미지급금 등 120
③여행 정산	A) 관광전수금 20	A) 관광알선수입 20
	B) 행사비 20	B) 관광전수금 20

※ A, B 여행상품의 계약금액은 100, 회사지급비용은 각각 80, 120

그러나, 영업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회계부서는 영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여행상품별 관광전수금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회계처리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회사는 사전 예방절차 또는 사후 정확성 검증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18년 결산과정에서 관광전수금 잔액에서 오류가 발견된 이후 모회사의 내부조사를 통해 '14~'18년 기간 동안 관광전수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이 비로소 드러났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결산시점에 정산완료된 여행상품의 관광전수금 잔액은 수익(매출) 또는 비용(판매관리비)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상계하고 수익인식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여행상품의 관광전수금 잔액만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영업부서의 정산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회계처리함으로써 관련 비용 및 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19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미리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167에 따르면, 수익인식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출에 대한 선수금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11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정의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내부정산자료에 대한 검증절차의 부재로 인해 관광전수금을 적절하게 정산하지 않아 결산기말의 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여행알선업의 경우 개별 여행의 관리단위이면서 손익을 인식하는 계정과목인 관광전수금이 주된 계정과목이고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함에도, 감사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련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광전수금에 대한 내부통제 검토, 표본추출을 통한 지급 내역 검토 등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내부결산프로세스 상 취약한 부분을 발견한 즉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계획 수립시 회사의 영업특성, 결산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을 파악하고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증감사절차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프로세스를 증빙과 함께 상세하게 검토하는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FSS/2311-15 :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 ▣ 쟁점 분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 결정일 : 2022년
- ▣ 회계결산일: 2019.1.1. ~ 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는 업체로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산정 시 개별평가와 집합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매출채권 중 거래처의 부도,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며(개별평가), 이외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 24개월 평균 연체전이율인 Roll-rate를 산출하여 손실충당금을 설정(집합평가)한다.

회사는 상기 설정기준에 따라 관련 손실충당금을 계상하였으나 그 계산 과정에서 아래 오류가 발생하였다. 먼저, 취소 처리된 매출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는 제거하였으나 손실충당금 계산 산식에는 포함하였다. 또한, 외화매출에 대해 매분기말에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고 다음 분기 초에 외화환산손익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월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 금액이 왜곡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범위(0%~100%)를 벗어나는 연체전이율이 계산되었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재무제표의 매출채권 잔액은 올바르게 기재하였으나, 손실충당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연령분석표 상 매출채권 금액 및 연체전이율(Roll-rate)에 오류가 발생하여 손실충당금 및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19년) 및 과소계상('20년)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5.5.4 및 문단5.5.8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개별평가나 집합평가로 전체기간 기대 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고, 손실충당금과 관련된 손상차손 및 환입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5.5.17에 따르면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보고기간 말 현재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잔액 및 연체전이율(Roll-rate) 계산상의 오류로 인해 손실충당금이 잘못 계상되어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 손실충당금과 관련된 추정치 계산시 수립한 회계정책을 검토해야 하며 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원천 데이터의 합리성과 특이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최종 회계처리에 반영되는 금액의 계산검증을 수행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FSS/2311-16 :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 ▣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 **결정일 :** 2022년
- ▣ **회계결산일:** 2013.1.1. ~ 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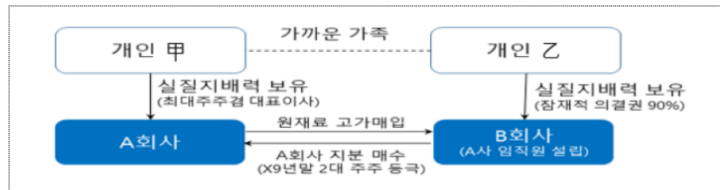
A사(이하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개인)이 회사를 실질 지배하고 있다.

회사의 임원인 丙은 X2년 6월에 회사의 공장 내에 장비부품 제조업체인 B사를 설립(전액 출자)하였으며, B사는 X2년 9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甲의 가까운 가족인 乙(개인)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乙이 B사에 대한 실질 지배주주 지위를 획득하였다.(잠재적 의결권 90%)

회사는 X3년부터 B사로부터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고가에 매입하였고, B사는 동 거래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회사의 지분을 계속 매수하여 X9년말에는 회사의 2대 주주가 되었으며, 乙은 B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회사의 보통주를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는 B사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구조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거래처인 B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의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B사와의 매입·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1)에 따르면, 개인이 보고기업에 지배력(공동지배력 포함)이 있거나 보고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2)에 따르면, 상기 ①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해 지배(공동지배 포함)되는 기업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甲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甲의 가까운 가족인 乙과 회사 임원인 丙이 B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B사는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시한 특수관계자 현황과 거래내역에 대해 통상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여러 연도에 걸쳐 회사와 B사 간에 발생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검토시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시한 특수관계자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를 누락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FSS/2311-17 :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 **쟁점 분야:**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6.1.1. ~ 2018.6.30.

1. 회사의 회계처리

통신 및 방송장비를 제조하는 상장기업 A사(이하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가족 및 지인을 회사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타인명의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기술개발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회사의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뒤 일부 금액을 타인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횡령하였으며, 임직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직원들에게 이체한 뒤 동 금액을 횡령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甲은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다시 회사의 계좌에 동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기도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대표이사 甲의 횡령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으며,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회사는 대표이사 甲이 횡령한 금액을 횡령손실로 인식해야 함에도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甲이 회사법인계좌의 자금을 유용하였음에도 동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공시하지 않았다.

③ 금융감독원은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횡령손실이 과소계상됨에 따라 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고, 대표이사 甲이 유용한 금액만큼 특수관계자 거래가 주식에서 누락되었다고 결론내렸다.

4. 시사점

회사와 임직원간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감사인은 동 금전거래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해 관련 계약내용 및 구조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 관련 기준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등을 통해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FSS/2311-18 :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 ▣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 ▣ **결정일 :** 2022년
- ▣ **회계결산일:** 2021.1.1. ~ 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로, X0.4월에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종속기업 B사(이하 '종속기업')를 설립하였다.

종속기업은 X1년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과정에서 ①세무조정을 통해 산정한 법인세 부담액을 누락하고, ②동 세무조정 시 사용된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액을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법인세비용을 과소계상하였다.

회사는 법인세비용이 과소계상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면밀한 검토 및 수정 없이 그대로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급증하여 당기순손실이 대규모 이익으로 흑자 전환하였음에도, 큰 금액의 법인세수익이 계상된 종속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X1년 연결재무제표 상 자기 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19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또한, B87에 의하면,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래와 사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6에 따르면,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고, 동 기준서 문단58에 따라 동 법인세비용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이 법인세비용을 과소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회사가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면밀한 검토 및 확인 없이 그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라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이익에 대하여 납부할 비용으로서, 당기순이익 대비 큰 금액의 법인세수익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회계처리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이 수행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3.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 기획재정부는 '23.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108 의 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input type="checkbox"/> (한도) 연 200만원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요건 완화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좌 등)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

2.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소득령 §117, 법인령 §9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input type="checkbox"/>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소득(법인)세액 (가산세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추가></p>	<input type="checkbox"/>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 <input type="checkbox"/> (좌 등) - (좌 등) - 단,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23.8.8. 이후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소득법 §52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상향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input type="radio"/>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input type="radio"/>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input type="radio"/> (좌 등) - (좌 등)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인령§50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input type="radio"/> 업무전용보험가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요건 강화 <input type="radio"/> (좌 등) <input type="radio"/>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4.1.1. 시행)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적용시기> '24.1.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 의 3-§167 의 4-§167 의 10-§167 의 1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증과 제외 대상 <input type="checkbox"/> 지방저가주택 (주택 수에서도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input type="checkbox"/> 증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배제 1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❶ 소형 신축주택*</p> <p>* 1) 면적: 전용면적 60m²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❷ 준공 후 미분양 주택*</p> <p>* 1) 면적: 전용면적 85m²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p>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6.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 (소득령 §216 의 5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4 의 5 신설)>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 등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을 행사·지급받는 경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 주식기준보상 개념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내국법인 임원 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①(1)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원 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외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②(1), (2) □ 주식기준보상의 정의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

<개정이유>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input type="checkbox"/> 중소·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p>

<개정이유>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법인령 §2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input type="checkbox"/>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가산세 등 <input type="checkbox"/>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이 반출된 경우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input type="checkbox"/> 벌금, 과료, 과태료 <input type="checkbox"/>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input type="checkbox"/>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input type="checkbox"/> 법령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되는 범위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좌 등) <p style="text-align: center;">- 장애인고용부담금</p>

<개정이유>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확보

9.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법인령 §72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추 가>	<input type="checkbox"/>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input type="radio"/>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10.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 의 2⑤)>

<input type="checkbox"/>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반환특례 사유 <input type="radio"/> 약혼자의 사망 <input type="radio"/>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 (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 (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 의 2⑤)>

- 아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①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 ②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면제 범위 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 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② 납부지연가산세 <input type="checkbox"/>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x ① x ②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② 1일 10만분의 22

<개정이유> 수정신고 등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부가령 §42(1))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저술, 음악, 무용, 배우, 가수, 감독, 직업운동가 등 ○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면세요건 명확화 ○ (좌 동)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이유>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합리화

13.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부가령 §88④(4)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의 거래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내역 <input type="checkbox"/>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내역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거래증빙서류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판매대행·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서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대행·중개자

<개정이유>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조특령 §16 의 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8 의 2)>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하는 비과세 규정에서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제 12 조제 3 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 <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되는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input type="checkbox"/>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조특령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기업	<input type="checkbox"/>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등) - 외국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방법* 규정 *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 <input type="checkbox"/> (좌 등)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16.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 대상만 규정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4대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input type="checkbox"/> 13개 분야* 258개 기술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신 설></p> <p><추 가></p> </div>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14개 분야 270개 기술 - (분야) 방위산업 신설 - (기술) 신규 15개, 확대 8개 - (신규) 15개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신규 추가 기술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에너지·환경(3개)</td> <td>대형원전 제조기술 등</td> </tr> <tr> <td>로봇(1개)</td> <td>Non-coding 교시기술</td> </tr> <tr> <td>첨단소부장(5개)</td> <td>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td> </tr> <tr> <td>탄소중립(3개)</td> <td>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td> </tr> <tr> <td>방위산업(3개)</td> <td>추진체계 기술 등</td> </tr> </tbody> </table> - (확대) 8개 <div style="text-align: center;"> <p>< 현행 기술 범위 확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미래형자동차(1개)</td> <td>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td> </tr> <tr> <td>바이오·헬스(2개)</td> <td>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td> </tr> <tr> <td>에너지·환경(2개)</td> <td>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td> </tr> <tr> <td>로봇(1개)</td> <td>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td> </tr> <tr> <td>탄소중립(2개)</td> <td>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td> </tr> </tbody> </table> </div> </div>	분야	세부기술	에너지·환경(3개)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로봇(1개)	Non-coding 교시기술	첨단소부장(5개)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탄소중립(3개)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방위산업(3개)	추진체계 기술 등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자동차(1개)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	바이오·헬스(2개)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	에너지·환경(2개)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	로봇(1개)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	탄소중립(2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
분야	세부기술																								
에너지·환경(3개)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로봇(1개)	Non-coding 교시기술																								
첨단소부장(5개)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탄소중립(3개)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방위산업(3개)	추진체계 기술 등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자동차(1개)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																								
바이오·헬스(2개)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																								
에너지·환경(2개)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																								
로봇(1개)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																								
탄소중립(2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8. R&D 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대상</p> <p>○ 7개 분야 62개 기술*</p> <p>*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p> <p>○ 7개 분야 66개 기술</p> <p>- (기술) 신규 4개, 확대 1개</p> <p>- (신규) 4개</p> <p style="text-align: center;">< 신규 추가 기술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디스플레이 (1개)</td> <td>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소 (3개)</td> <td>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 수소 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td> </tr> </tbody> </table> <p>- (확대) 1개</p> <p style="text-align: center;">< 현행 기술 범위 확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도체 (1개)</td> <td>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디스플레이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 수소 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
분야	세부기술										
디스플레이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 수소 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사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조특령 §104의21)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 의 24)>

-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허용
-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input type="checkbox"/>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 복귀사업장 간 업종 동일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업종요건 상향입법 및 완화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로 상향입법 <input type="checkbox"/>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성 판단 기준, 세부절차는 산업부장관이 고시

<개정이유>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방법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명)	'21년	'22년(최초공제)		'23년(예상)	
	인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청년 등	1.50	4.50	+3.00	7.00	+2.50
청년 외	2.04	2.66	+0.62	2.00	-0.66
전체	3.54	7.16	+3.62	9.00	+1.84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22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총 43,774천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 청년등: 39,000천원(3.00명 × 1,300만원), 청년등 외: 4,774천원(0.62명 × 770만원)

(질의내용)

○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 공제 적용 방법

<갑설> 조특법§29의7①(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른 '22년도 공제세액(43,774천원)을 '23년에 적용

<을설> '22년 고용증가인원에 조특법§29의8①(통합고용세액공제)1호 및 2호의 금액을 곱한 금액(52,390천원)으로 적용

* 청년등 : 46,500천원(3.00명 × 1,550만원), 청년등 외 : 5,890천원(0.62명 × 950만원)

<병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2차년도 공제 불가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임.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906, 2023.08.28)

(사실관계)

- (질의 1) '22 년 청년을 신규 채용한 질의법인은 향후에도 고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나, 청년 고용유지가 불확실한 상황
- (질의 2) '21 년 청년 및 청년외(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후, '22 년 전체 고용은 유지하였으나 청년 고용이 감소
- (질의 3) '21 년 청년외 5 명을 신규 채용하여 공제를 적용받은 후 '22 년 청년 및 청년외 고용이 각각 2 명씩 감소
- (질의 4) '18 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은 후 '20 년 고용이 감소하여 사후관리를 유예받고, '21 년에 '20 년 대비 고용이 감소

(질문요지)

-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제 1 항제 1 호의 공제(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대 기업이 동법 동조항 제 2 호의 공제(일반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안> 일반공제 선택 적용 불가
 - <2안> 일반공제 선택 적용 가능
- (질의 2)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 <1안> 잔여 기간에 대해 일반공제액 적용
 - <2안> 잔여공제 불가
- (질의 3) 일반공제만 신청하여 적용받은 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계산방법
 - <1안>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액 추가납부
 - <2안>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대해서도 일반공제액 추가납부
- (질의 4) '18 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20 년 고용감소로 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제 5 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유예 받았으나, '21 년에 '20 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
 - <1안> '21년 고용감소 인원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계산
 - <2안> '20년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회신)

「질의2」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하고 「질의1」, 「질의3」 및 「질의4」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함.

■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0, 2023.12.14)

(사실관계)

- 중견법인인 A 법인은 건설 현장의 고소작업대 등 안전/건설장비, 산업용 로봇 등을 렌탈하는 사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영위 중
 - A법인은 2017~2021 사업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매입한 임대용 유형자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

* (201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8~2019)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2020~2021) 통합투자세액공제

(질의요지)

- 산업용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1안>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안>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청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함.

■ 분할법인 및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2022-법규법인-5223, 2023.12.26)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이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임.
- '19.**.**.*****㈜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의법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물적분할을 실행하였으며(* 동 물적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 이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질의법인에 승계함.
- 한편, 질의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자산은 분할 승계한 이후 추가로 투자하여 투자완료함.

(질의요지)

- 분할 전 분할법인이 투자한 건설중인자산을 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쟁점자산의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성장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시설")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투자 중인 시설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 후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투자 중인 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2024년 1월호

- CFC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질의요지)

- CFC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